기부금품 관리규정

제정 2020. 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창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기부되는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접수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 일반기부금품이라 함은 기부 조건의 지정이 없는 기부금품을 말한다.
3. 지정기부금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금영수증「별지 제1호 서식」발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회의 기부금품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부금품의 종류)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기부금품
2. 지정기부금품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관) ① 가맹경기단체가 기부자로부터 기부 신청을 받아 본회에 접수를 요구하는 기부금품의 경우는 관련 단체의 장이 확인한 후 본회에 접수한다.
② 지정기부금품의 지정 취지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이나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이나 본회의 규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신청) 본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금품 또는 기부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기부금품일 경우에는 기부조건

제8조(기부금품 장부비치) 본회 및 가맹경기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금품에 대하여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 보관하고, 기부대상과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물품 관리대장 장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부물품 가액 산정) ①금전이 아닌 물품 형태로 접수 받은 경우 당해 기부물품의

가액은 이를 접수한 때의 시가로 기부가액을 산정하며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금액에 의한다.
②시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물가정보 또는 기부자가 제시하는 매입증빙서류상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해당 기부물품의 가격이 없거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최근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최근 거래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제공하는 원가자료에 의한다.

제10조(기부금품의 채납 결정 및 통지) ①고창군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후원협약에 따른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기부금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기부금품 채납 여부 결정시 해당 기부금품의 후원 조건이 본회 규약의 고유목적사업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품의 채납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기부금품의 회계처리) 기부금품은 본회 자체회계의 수입 및 지출로 처리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회장은 일반기부금품을 기부 목적과 대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 및 규약의 고유목적사업, 기부자의 기부취지등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을 고려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품에 의한 사업의 조정 지원) ①회장은 지정기부금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효과를 고려하여 그 금액 또는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지정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품 또는 사업 내용의 조정을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품을 채납한다.
③접수된 지정기부금품 중 해당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부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일반기부금품으로 채납할 수 있다. 단, 지정기부자가 당초 기부 신청시 지정기부금품의 잔액 처리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정기부금품의 교부신청 및 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등) 지정기부금품의 교부신청 및 교부, 지정기부 대상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등은 본회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제정 2020. 0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유형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제2호(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5호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당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422
우리사주 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2.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장부가액	Max(장부가액,시가)	장부가액*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기부금품 신청서

○ 성 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소재지) :

○ 기부내용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기부조건(지정기부일 경우에만 기재함)

위와 같이 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부물품 관리대장

○ 품 명 :　　○ 기부자 :

년월일	규　격	단위	이월	입고	불출	재고	수령단체 및 인수자	서　명